제788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경찰청)	1.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강화(강화)심신상실,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	1.비중요
2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1.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설) ○ 임시이사 법인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기본서류(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에 더하여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결산서 등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비용 충당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재산 처분 동의서 등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중요
3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안전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단층통보 사항 및 방법(신설) 1. 제정이유 지형변경시 단층정보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지진화산재해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이 개정('20.6.9.)되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사항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단층정보 DB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이「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에 따라 각종 조사·연구,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정보를 발견한 경우와 이러한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적용 나. 단층정보의 입력 장소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통보사항 명시(안 제4조제1항)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발견한 단층정보를 활성단층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통보 2)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a. 단층의 발견 위치 및 일시 b. 단층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 및 원경 단층사진 각 1장(규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비교 가능 물체 포함) c. 사업명칭, 총 공사기간 및 굴착기간 d. 통보자 이름, 연락처, 입력기관, 발주처명 다. 단층정보의 관리 업무 대행(안 제4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성단층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를 정하여 단층정보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라. 단층정보의 활용 조치(안 제5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활성단층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통보된 단층정보를 조사·연구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1.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강화(강화)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설치, 인상시, 해체시에 실시	1.비중요
5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1.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요건(신설)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 2.자산관리회사 물적설비 요건(신설)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두어 전산설비 및 통신 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등 세부사항별로 적합여부 확인을 받도록 함	1.비중요 2.비중요
6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납) 강화(강화) 납 관리기준 강화 (0.009%) 2.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프탈레이트류) 강화(신설)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신설 (함량 기준 0.1%)	1.비중요 2.비중요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청)	1.안전사고 보고의무(신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제14조의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에 따라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의 보고 방법 등을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로 정함 - (보고방법) 다중이용업주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토록 함 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신설)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항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제2항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세부적으로 규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공개기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이 경우 공개기간은 60일 이내로 함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문화재청)	1.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강화) ㅇ 전문교육 이수 대상 :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ㅇ 전문교육 이수 시간 : 32시간~64시간	1.비중요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신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환경부)	설) ㅇ 제조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제품명이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ㅇ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10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은폐장소에 대한 전기배선 시설기준(강화) ㅇ 강화 규제(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 232.11, 234.11) -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불가, 은폐장소 합성수지몰드공사 및 애자사용공사 불가	1.비중요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요금장치 변경금지 의무 부과(강화) 택시미터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세분화하고, 택시앱미터기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요금산정기능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2.택시앱미터 검정신청 의무 부과(강화) 택시미터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세분화하고, 택시앱미터기의 경우에도 검정신청절차를 통해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정을 받도록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12	철도차량 기술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1.철도차량제작사에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방법 준수 의무 부과(강화)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사업수행형태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방법 적용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여성가족부)	1.성폭력 고충처리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신설)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창구마련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1.비중요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질병관리청)	1.행정처분 기준(강화) - 방역지침 준수명령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 중단10일'로 기준을 강화하고, 차수별 기준을 한단계씩 당김	1.비중요
15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안 (해양수산부)	1.피마자박에 대한 인체 위험성 제거 입증방법 규제(신설) ㅇ 피마자박이 위험물 운송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험성 제거의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송하인 등은 특정 열처리 방법으로 피마자박의 인체위험성이 제거되었음을 시험기관으로부터 검증 받고, - 그에 따라 피마자박을 열처리한 후 선적 전에 증빙자료를 선장 또는 선사에 제출하여야 함	1.중요
16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신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1.비중요
17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신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출	